

제주지방법원 2022. 4. 22 선고 2021가단556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AAA

변 론 종 결

2022. 03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0. 2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2018. 10. 30. 접수 제106151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자를 이행하라는 판결

이 유

판결

이 유

1. 처분 경위

○ BBB은 2017. 12. 13. ▲▲시 ▲▲면 ▲▲리 zzz-z 토지를 7억 3,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8. 2. 28.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, 2018. 4. 19. 수정 신고를 하여 2018. 9. 1. 원고로부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,xxx,xxx원을 2019. 8. 31.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, 2020. 5. 15.까지 가산금 등 합계 165,339,680원을 체납하였다.

○ BBB은 2018. 10. 28.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을 피고에게 증여하고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고 한다), 2018. 10. 30.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○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부동산이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,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. 피고의 선의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.

을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BBB은 피고의 종원인데, 피고는 2014. 8. 23.경 BBB으로부터 대금 1,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

종원 중 CCC이 이장비용 1,000만 원을, DDD가 부지대금 1,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, 피고는 2016. 4. 23. 이 사건 토지에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한 2016. 8. 29.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,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, DDD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BBB에게 2016. 12. 6. 300만 원, 2017. 8. 3. 200만 원, 2018. 5. 27. 5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BBB이 2018. 10. 28.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성립시기는 2017년 12월 말일로 보이는데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인 2014. 8. 23.경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피고의 선조 및 종원들의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뒤 약정한 대금을 2018. 5. 27.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바,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